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4867
결재일자	2015.4.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성북구인권센터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	
왕주미	김정아	이경환	代손정수	04/03 김영배	
협 조					

- 2015년 3월 (제27차) -
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



감 사 담 당 관
인 권 센 터

2015년 3월 (제27차) 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

■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5. 3. 24.(화) 15:00~18:00
- 장 소 : 안암동 복합청사(4층)
- 참 석 자 : 10명(김덕진, 김은영, 김한민, 박다혜, 박현숙, 배정학, 윤성봉, 윤정섭, 이윤하, 김홍미리)
- 주요안건
 - 조례·규칙 제·개정안 5건 인권영향평가 심의
 - 2015년 4월 업무추진사항 보고
 - 특별위원회, 소위원회 진행 사항 보고

■ 회의결과

- 심의 및 결정사항
 - 조례·규칙 제·개정안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: **원안동의**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: **원안동의**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: **권고결정**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: **의견서 전달**
- 결정사항 - 권고결정
 - 인권위원회 권고 제23호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4조2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함
 - 2항 조문 변경 : '구청장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, 그 절차는 시행규칙을 따른다'
 - 삭제가 가능한 예외 조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·삭제 할 것
 - 1호 : '국가 안전을 저해할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로 수정, 이하 삭제

- 2호 삭제
- 3, 4호 : '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' 로 수정
- 6호 : '욕설, 음란물, 혐오 또는 차별을 조항하는 게시물'로 수정
- 7, 8, 9호 삭제
- 게시물 삭제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, 그 절차는 시행규칙에 따른다 - 규정 신설(3항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44조2항 개정 조례안

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관 등에 공개해야 한다.

1.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
2. 정치적 목적이거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
3. 특정기관·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
4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
5.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
6. 욕설·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
7.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
8.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
9.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관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

- 의견서 제출 :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- '어린이' 용어에 대한 의견서 전달 : **김한민 위원**

붙임 : 1. 제26차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1부.

2. 제26차 인권위원회 회의록 1부.

3. 권고 결정문(제21호)-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

4. 권고 결정문(제22호)-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1부

5. 의견 표명(5호)-인권증진 기본조례 시행규칙 1부. 끝.